



## 언론조정 · 중재 현황

제 1 장	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	13
제 2 장	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	29





# 제 1 장

##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

# 제 1 장

#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

## 1. 접수 유형별 현황

위원회는 2017년 총 3,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했다. 이를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을 통한 조정신청이 2,236건(69.2%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전자문서(Eye-Net) 725건(22.4%), 방문 189건(5.9%), 우편 74건(2.3%), 구술 6건(0.2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접수(전자우편 및 전자문서)가 전체 사건 수의 91.6%에 달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.

표 1-1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연도	구분	방문	우편	전자우편	전자문서	구술	기타	합계
2015		409	130	1,913	2,772	1	2	5,227
		(7.8)	(2.5)	(36.6)	(53.0)	(0.0)	(0.0)	(100)
2016		302	114	2,265	488	1		3,170
		(9.5)	(3.6)	(71.5)	(15.4)	(0.0)		(100)
2017		189	74	2,236	725	6		3,230
		(5.9)	(2.3)	(69.2)	(22.4)	(0.2)		(100)

\* ( ) 안의 숫자는 %

## 2. 청구권별 처리현황

2017년 접수·처리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,557건(48.2%), 손해배상청구 1,117건(34.6%), 반론보도청구 362건(11.2%), 추후보도청구 194건(6.0%)이었다.

전체 피해구제율은 73.7%로 전년도에 비해 1.4%p 상승했다. 각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 청구의 피해구제율이 94.4%로 가장 높았고, 정정보도청구 74.5%, 손해배상청구 71.4%, 반론보도청구 65.9%가 뒤를 이었다.

**표 1-2**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구분 연도	청구명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	
2015	정정	3,098	470	88	48		420	(2)	63	17	1,992	(1,836)	79.4
	반론	419	168	23	12	(1)	44		37	3	132	(102)	77.6
	추후	150	33	13	2		1		12	1	88	(83)	94.2
	손배	1,560	269	94	39	(1)	245	(2)	210	11	692	(612)	73.0
	계	5,227	940	218	101	(2)	710	(4)	322	32	2,904	(2,633)	77.9
2016	정정	1,555	479	86	64	(2)	223		53	7	643	(485)	70.4
	반론	386	125	27	14		45	(3)	20	2	153	(99)	69.8
	추후	160	32	3	5		4	(2)		5	111	(106)	92.3
	손배	1,069	325	66	35	(2)	144		35	5	459	(359)	73.1
	계	3,170	961	182	118	(4)	416	(5)	108	19	1,366	(1,049)	72.3
2017	정정	1,557	487	40	34		237	(4)	52	38	669	(562)	74.5
	반론	362	100	6	11		48		35	4	158	(107)	65.9
	추후	194	22	2			3		1	15	151	(144)	94.4
	손배	1,117	306	24	16		200	(2)	34	29	508	(421)	71.4
	계	3,230	915	72	61		488	(6)	122	86	1,486	(1,234)	73.7

※ ( )안의 숫자는 조정성립·직권조정결정(동의)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
 ※ 피해구제율 =  $\frac{\text{피해구제건수(조정성립+직권조정결정 중 동의+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*)}}{\text{전체 조정청구 건수-(기각+각하)}} \times 100$   
 \*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등을 의미함

### 3.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

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, 개인이 청구한 사건이 전체의 64.3%인 2,077건이었으며, 피해구제율은 76.4%로 나타났다. 단체 중에서는 회사가 495건(15.3%)을 청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, 일반단체 246건(7.6%), 지자체·공공단체 198건 (6.1%),

교육기관 93건(2.9%), 국가기관 64건(2.0%), 종교단체 57건(1.8%)의 순으로 청구 건수가 많았다.

단체별 피해구제율로는 국가기관 87.5%, 일반단체 및 교육기관 각 73.1%, 지자체·공공단체 71.3%, 회사 63.4%, 종교단체 63.2%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표 1-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연도	구분	신청인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피해 구제율 (%)		
	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	동의	이의	( )							
2015	단체	개 인	3,123	476	122	48	(2)	369	(2)	295	27	1,786	(1,621)	79.4
		국가기관	85	47	13	2		4		1		18	(14)	88.1
		지자체 공공단체	171	55	15	16		25				60	(39)	63.7
		일반단체	570	162	38	34		66	(2)	16	2	272	(241)	80.3
		종교단체	728	15	3			131		2	2	575	(570)	81.2
		회사	466	149	25	19		94		8	1	170	(128)	66.1
		교육기관	84	36	2	2		21				23	(20)	69.0
		계	5,227	940	218	101	(2)	710	(4)	322	32	2,904	(2,633)	77.9
2016	단체	개 인	1,919	530	100	82	(4)	200	(5)	63	17	927	(724)	74.1
		국가기관	64	21	7			12		1		23	(16)	69.8
		지자체 공공단체	157	67	3	2		38			1	46	(33)	66.0
		일반단체	373	122	24	5		77		28		117	(85)	67.0
		종교단체	110	55	16	6		12		2		19	(15)	79.6
		회사	464	139	20	13		63		14	1	214	(165)	72.2
		교육기관	83	27	12	10		14				20	(11)	60.2
		계	3,170	961	182	118	(4)	416	(5)	108	19	1,366	(1,049)	72.3
2017	단체	개 인	2,077	479	44	23		284	(4)	94	81	1,072	(927)	76.4
		국가기관	64	41	4	3		3				13	(11)	87.5
		지자체 공공단체	198	69	6	7		39	(1)	1	2	74	(63)	71.3
		일반단체	246	109	10	2		39	(1)	8		78	(54)	73.1
		종교단체	57	21	1			19				16	(14)	63.2
		회사	495	150	7	26		94		19	3	196	(143)	63.4
		교육기관	93	46				10				37	(22)	73.1
		계	3,230	915	72	61		488	(6)	122	86	1,486	(1,234)	73.7

※ ( )안의 숫자는 조정성립·직권조정결정(동의)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

## 4.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

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청구사건을 구분하면 기타 또는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이 225건(10.8%)으로 가장 많았고, 5급 이하 공무원 219건(10.5%), 회사원 196건(9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피해구제율로는 금융업 종사자와 공공기관장의 청구 사건이 각 100%를 기록했고, 이어 국회의원 91.1%, 학생 89.4%, 5급 이하 공무원 87.7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대조적으로 낮은 피해 구제율을 보인 직업군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36.7%, 연예인 40.0%, 군인 41.0%, 정당 정치인 47.6% 등이었다.

표 1-4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구분 직업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
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동의	이의							
국회의원	81	13			9	(4)		2	57	(55)	91.1
법조인	61	26		8	3				24	(24)	82.0
4급이상 고위공무원	30	7			14				9	(4)	36.7
5급이하 공무원	219	37	2	4	16				160	(153)	87.7
군인	61	18	2		6				35	(5)	41.0
경찰	26	12			7				7	(4)	61.5
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	225	18		2	13			29	163	(142)	81.6
정당정치인	55	12			12		13		18	(8)	47.6
의료인	91	27			7				57	(52)	86.8
문화예술인	77	11		3	9		1	4	49	(49)	83.3
종교인	51	10		2	16			1	22	(14)	48.0
회사원	196	65	7		17		11	1	95	(79)	82.1
언론인	54	14	4		21			2	13	(11)	55.8

직업	구분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피해 구제율 (%)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
교육자		182	56	7	1	45	3	21	49	(46)	69.0	
개인사업가		143	47	6	1	13	5	15	56	(51)	84.6	
금융업 종사자		14	11						3	(3)	100	
연예인		7	2			2		2	1		40.0	
학생		87	14	7		5	2		59	(55)	89.4	
시민활동가		33	4			8	2		19	(18)	71.0	
공공기관장		9	7						2	(2)	100	
조합대표 또는 협회장		10				2			8	(8)	80.0	
주부		11	2			3	4		2	(2)	57.1	
무직		63	17			8	2		36	(34)	83.6	
알수없음		259	35	6		42	49	2	125	(107)	71.2	
기타		32	14	3	2	6	2	2	3	(1)	64.3	
계		2,077	479	44	23	284	(4)	94	81	1,072	(927)	76.4

※( )안의 숫자는 조정성립·직권조정결정(동의)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

## 5.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

조정대상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사건이 1,842건으로 그간의 경향과 같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매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57.0%로 예년의 52.4%에서 상당 폭 증가했다. 다음으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416건(12.9%)으로, 예년에는 신문이나 방송보다 조정대상 비중이 하위에 있었던 매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.

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기타 매체를 제외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이 각 78.5% 및 76.2%로 가장 높아 청구 사건 비중으로 살펴볼 때와 같이 가장 상위를 기록했다. 그 다음은 신문 69.7%, 뉴스통신 69.5%, 방송 64.1% 등으로 나타났다.

표 1-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구분 연도	매체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피해 구제율 (%)		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	취하		
				동의	이의								
2015	신 문	757	223	43	18		178		11	4	280	(239)	68.1
	방 송	892	116	27	15		111		72	5	546	(499)	78.8
	잡 지	18	11	2						2	3	(2)	93.8
	뉴스통신	264	45	10	4		16		21		168	(156)	86.8
	인터넷신문	2,490	482	91	55	(2)	306	(4)	108	21	1,427	(1,293)	79.3
	인터넷뉴스 서비스	799	63	45	8		99		110		474	(444)	80.1
	기 타	7			1						6		0.0
	계	5,227	940	218	101	(2)	710	(4)	322	32	2,904	(2,633)	77.9
2016	신 문	573	228	32	29	(2)	94	(1)	19	2	169	(116)	68.7
	방 송	423	119	30	11		82	(3)	16	6	159	(79)	57.6
	잡 지	16	3				7		2		4	(2)	35.7
	뉴스통신	165	48	10			14		11		82	(69)	82.5
	인터넷신문	1,661	498	88	69	(2)	175	(1)	49	11	771	(652)	77.5
	인터넷뉴스 서비스	330	65	20	9		44		11		181	(131)	67.7
	기 타	2		2									100.0
	계	3,170	961	182	118	(4)	416	(5)	108	19	1,366	(1,049)	72.3
2017	신 문	380	162	14	4		80	(1)	7	3	110	(81)	69.7
	방 송	361	123	12	9		96	(2)	8	5	108	(86)	64.1
	잡 지	23	7				8			1	7	(3)	45.5
	뉴스통신	206	54	7	5		28		9	10	93	(69)	69.5
	인터넷신문	1,842	485	33	34		235	(1)	61	60	934	(793)	76.2
	인터넷뉴스 서비스	416	82	6	9		41	(2)	37	7	234	(202)	78.5
	기 타	2	2										100.0
	계	3,230	915	72	61		488	(6)	122	86	1,486	(1,234)	73.7

※( )안의 숫자는 조정성립·직권조정결정(동의)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

## 6.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

2017년 위원회가 접수한 조정사건의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,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음성권 침해 및 재산상 손해로 인한 사건이 전부 구제되었고,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사건도 각 87.5%, 86.9%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.

전체 조정신청사건 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은 94.7%에 해당하는 3,060건이었고, 그중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1,419건(46.4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조정성립 847건(27.7%), 조정불성립결정 471건(15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이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사건은 전체의 3.6%에 해당하는 105건으로 조정성립 47건, 취하 43건, 조정불성립결정 5건 등으로 처리되었다.

표 1-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구분 연도	침해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	피해 구제율 (%)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	
2015	명예훼손	4,891	866	169	99	(2)	683	(4)	191	31	2,852	(2,591)	77.8
	초상권 침해	205	25	11			10		130	1	28	(22)	78.4
	음성권 침해	14	7	2							5	(3)	85.7
	성명권 침해	10	4								6	(6)	100.0
	사생활 침해	56	7	34			14				1	(1)	75.0
	재산상 손해	51	31	2	2		3		1		12	(10)	86.0
	기 타												
	계	5,227	940	218	101	(2)	710		322	32	2,904	(2,633)	77.9
2016	명예훼손	2,972	911	161	117	(4)	405	(5)	98	16	1,264	(956)	71.3
	초상권 침해	81	29	13	1		5		4	2	27	(24)	88.0
	음성권 침해												
	성명권 침해	19									19	(17)	89.5
	사생활 침해	51	9	4			2				36	(34)	92.2
	재산상 손해	33	10	4			4		4		11	(10)	82.8
	기 타	14	2						2	1	9	(8)	90.9
	계	3,170	961	182	118	(4)	416	(5)	108	19	1,366	(1,049)	72.3

구분 연도	침해유형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피해 구제율 (%)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
2017	명예훼손	3,060	847	64	59	471	(6)	118	82	1,419	(1,181)	73.4
	초상권 침해	105	47	4		5		3	3	43	(35)	86.9
	음성권 침해	4	2	1						1	(1)	100
	성명권 침해	18	5	2		7				4	(3)	55.6
	사생활 침해	8	4			1				3	(3)	87.5
	재산상 손해	8	2	1						5	(5)	100
	기 타	27	8		2	4		1	1	11	(6)	56.0
	계	3,230	915	72	61	488	(6)	122	86	1,486	(1,234)	73.7

※ ( )안의 숫자는 조정성립·직권조정결정(동의)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

## 7. 중재부별 처리결과

서울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73.9%로 2016년보다 2.3%p 증가했다. 서울 8개 중재부 중에서는 서울제3중재부와 서울제7중재부, 서울제6중재부가 각 82.8%, 80.1%, 78.0%로 평균보다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.

지역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전년도보다 0.9%p 증가한 73.2%로 나타났고 그 중 경기 중재부 82.0%, 대구중재부 78.1%, 부산중재부 76.9%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.

표 1-7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구분 연도	중재부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피해 구제율 (%)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
2015	서울1	554	84	50	23	(2)	58	45	4	290	(271)	80.6
	서울2	232	54	16	12		42	11		97	(67)	62.0
	서울3	311	61		9		68	51	6	116	(78)	54.7
	서울4	353	43	17	12		37	70		174	(152)	74.9
	서울5	455	74	39	20		192	(2)	2	4	124	(104)

구분 연도	중재부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피해 구제율 (%)	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	
2016	서울6	543	68	7		69		5		394	(362)	81.2	
	서울7	1,115	84	7	3	29		19	1	972	(938)	94.0	
	서울8	662	114	37	11	88		104	2	306	(288)	79.0	
	소 계	4,225	582	173	90	(2)	583	(2)	307	17	2,473	(2,260)	77.4
	부산	78	18				7	(2)			53	(41)	78.2
	대구	80	17				15				48	(41)	72.5
	광주	214	115	28					8	7	56	(56)	100.0
	대전	84	25	2			4				53	(45)	85.7
	경기	259	89	7	5		20		4	4	130	(111)	82.5
	강원	42	18				4				20	(20)	90.5
	충북	71	26				29			2	14	(14)	58.0
	전북	78	28	6			8		2	2	32	(23)	77.0
	경남	62	15				32		1		14	(13)	45.9
	제주	34	7	2	6		8				11	(9)	52.9
	소 계	1,002	358	45	11		127		15	15	431	(373)	79.8
	계	5,227	940	218	101	(2)	710	(4)	322	32	2,904	(2,633)	77.9
	서울1	328	80	38	37		12		29	1	131	(55)	58.1
서울2	233	63	33	10		47		6	1	73	(60)	69.0	
서울3	266	83				62		14		107	(88)	67.9	
서울4	269	36	15	12		38		6		162	(127)	67.7	
서울5	240	57	54	26		27		4		72	(61)	72.9	
서울6	368	96	6			49		6	1	210	(195)	82.3	
서울7	271	100	8	12		36		9	2	104	(93)	77.3	
서울8	291	86	7	3		37		6		152	(121)	75.1	
소 계	2,266	601	161	100		308		80	5	1,011	(800)	71.6	
부산	110	19	2			3	(3)			86	(48)	65.5	
대구	73	35				8				30	(23)	79.5	
광주	163	107						14	4	38	(38)	100.0	
대전	66	23				18				25	(19)	63.6	
경기	183	60	13	2		33		7	2	66	(48)	69.5	

구분 연도	중재부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			피해 구제율 (%)		
			조정 성립	직권조정결정		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			
				동의	이의								
2017	강원	15	11						2		2	(2)	100.0
	충북	50	19				8	(2)			23	(10)	62.0
	전북	55	21				2		1		31	(19)	74.1
	경남	145	53	3	16	(4)	24		4		45	(38)	69.5
	제주	44	12	3			12			8	9	(4)	52.8
	소 계	904	360	21	18	(4)	108	(5)	28	14	355	(249)	74.1
	계	3,170	961	182	118	(4)	416	(5)	108	19	1,366	(1,049)	72.3
	서울1	321	78	8	21		27		15	3	169	(130)	71.3
	서울2	278	42	23	4		36		1	20	152	(103)	65.4
	서울3	319	69	5	4		33		17	41	150	(142)	82.8
	서울4	283	79	3	3		41		6	1	150	(118)	72.5
	서울5	287	76	20	20		31		46	1	93	(87)	76.3
	서울6	304	100				54		1	3	146	(134)	78.0
	서울7	312	93	7			40		18	2	152	(134)	80.1
	서울8	267	90		3		76	(4)	8	7	83	(66)	63.5
	소 계	2,371	627	66	55		338	(4)	112	78	1,095	(914)	73.9
	부산	54	10	3			8	(1)	2		31	(26)	76.9
	대구	114	54				18				42	(35)	78.1
	광주	82	30				25		2		25	(22)	65.0
	대전	71	5	1			19		1	3	42	(32)	56.7
경기	343	124	1			41		1	4	172	(152)	82.0	
강원	29	8				2				19	(10)	62.1	
충북	42	15				13	(1)			14	(14)	71.4	
전북	68	22		2		12		2		30	(23)	68.2	
경남	41	14	1	2		6		2		16	(6)	53.8	
제주	15	6		2		6			1			42.9	
소 계	859	288	6	6		150	(2)	10	8	391	(320)	73.2	
계	3,230	915	72	61		488	(6)	122	86	1,486	(1,234)	73.7	

\* ( )안의 숫자는 조정성립·직권조정결정(동의)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

## 8.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

### 가.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

2017년의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1,117건으로 전체 조정청구 건수 3,230건 중 34.6%를 차지했다. 2010년 이후 손해배상청구건의 비율이 최저점이었던 2015년의 29.8% 이후 2016년의 33.7%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.

표 1-8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연도	구분	전체 조정 청구건수	손해배상 청구건수
2015		5,227	1,560 (29.8)
2016		3,170	1,069 (33.7)
2017		3,230	1,117 (34.6)

\* ( ) 안의 숫자는 %

### 나.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

2017년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약 11,244만 원으로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. 최저 청구액은 0원<sup>1)</sup>이며, 최고 청구액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108억 원으로 나타났다. 중앙액은 최근 3년 간 같은 값인 2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.

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분포해 예년에 비해 최저액은 증가하고 최고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평균액과 중앙액은 각 약 136만 원과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액은 감소한 반면 중앙액은 동일하다.

1) 2017서울조정2168:2169 사건: 배상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으로 신청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피해구제가 되는 날까지 매일 1원씩을 산정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정 심리에 2회 불출석해 취하 간주로 종결됨

표 1-9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 단위 : 원)

연도 \ 구분	최저액	최고액	평균액	중앙액
2015	2	60,000,000,000	129,582,591	20,000,000
2016	100,000	10,786,381,412	113,115,649	20,000,000
2017	0	10,800,000,000	112,446,512	20,000,000

표 1-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 단위 : 원)

연도 \ 구분	최저액	최고액	평균액	중앙액
2015	500,000	4,000,000	1,602,000	1,000,000
2016	10,000	30,000,000	2,235,000	1,000,000
2017	100,000	10,000,000	1,369,737	1,000,000

표 1-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연도 \ 구분	100만원 미만	100만원~ 200만원 미만	200만원~ 500만원 미만	500만원~ 1,000만원 미만	1,000만원 이상	합계
2015	23 (23.0)	28 (28.0)	49 (49.0)	-	-	100 (100.0)
2016	15 (21.4)	32 (45.7)	15 (21.4)	7 (10.0)	1 (1.4)	70 (100.0)
2017	40 (48.2)	24 (28.9)	11 (13.3)	7 (8.4)	1 (1.2)	83 (100.0)

\* ( )안의 숫자는 %

침해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조정액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은 가장 높은 조정 평균액인 약 202만 원을 기록했고 개별사건의 최고 조정액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1천만원이었다. 이외 음성권·성명권·사생활 침해, 재산상 손해, 기타 사건의 조정액은 전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2백만 원 이내로 나타났다.

표 1-12 2017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

(2017. 1. 1. ~ 2017. 12. 31. 단위 : 원)

침해유형	조정액 빈도	최저액	최고액	평균액	중앙액	최빈액
명예훼손	24	100,000	7,000,000	2,027,273	1,250,000	1,000,000
초상권침해	50	300,000	10,000,000	1,097,872	700,000	500,000
음성권침해	1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
성명권침해	3	200,000	2,000,000	800,000	200,000	200,000
사생활침해	2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
재산상손해	1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
기 타	2	5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	

#### 다.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

전체 손해배상청구 1,117건 중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983건(88.0%)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, 이어 초상권 침해 86건(7.7%), 성명권 침해 및 기타 각 17건(1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는 명예훼손 사건이 취하 464건(47.2%), 조정성립 249건(25.3%), 조정불성립결정 184건(18.7%) 등으로 나타났고 초상권 침해 사건은 조정성립 40건(46.5%), 취하 31건(36.0%), 조정불성립결정 5건(5.8%) 등이었다.

표 1-13 2017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

(2017. 1. 1. ~ 2017. 12. 31.)

침해유형	구분 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
		조정 성립	작권조정 결정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
명예훼손	983 (100)	249 (25.3)	30 (3.1)	184 (18.7)	30 (3.1)	26 (2.6)	464 (47.2)
초상권침해	86 (100)	40 (46.5)	4 (4.7)	5 (5.8)	3 (3.5)	3 (3.5)	31 (36.0)
음성권침해	4 (100)	2 (50.0)	1 (25.0)				1 (25.0)

침해유형	구분 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
		조정 성립	직권조정 결정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
성명권침해	17 (100)	5 (29.4)	2 (11.8)	7 (41.2)			3 (17.6)
사생활침해	8 (100)	4 (50.0)		1 (12.5)			3 (37.5)
재산상손해	2 (100)		1 (50.0)				1 (50.0)
기 타	17 (100)	6 (35.3)	2 (11.8)	3 (17.6)	1 (5.9)		5 (29.4)
계	1,117 (100)	306 (27.4)	40 (3.6)	200 (17.9)	34 (3.0)	29 (2.6)	508 (45.5)

\* ( ) 안의 숫자는 %

### 라.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

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신청인 유형별로는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843건(75.5%)으로 가장 많았고, 기업체 104건(9.3%), 일반단체 59건(5.3%), 교육기관 28건(2.5%), 언론사 27건(2.4%)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.

개인 신청의 경우 취하로 처리된 사건이 426건(50.5%)에 달했고 이어 조정성립 205건(24.3%), 조정불성립결정 129건(15.3%) 등이 있었다. 기업체 사건은 조정성립 40건(38.5%), 취하 35건(33.7%), 조정불성립결정 19건(18.3%)의 순으로 많았으며 일반단체의 경우 취하 22건(37.3%), 조정성립 19건(32.2%), 조정불성립결정 13건(22.0%)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.

표 1-14 2017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

(2017. 1. 1. ~ 2017. 12. 31.)

신청인 유형	구 분 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	
		조정 성립	직권조정 결정	조정불성립 결정	기각	각하	취하
개인	843 (100)	205 (24.3)	24 (2.8)	129 (15.3)	32 (3.8)	27 (3.2)	426 (50.5)
국가기관	6 (100)	6 (100)					
지자체	23 (100)	7 (30.4)	2 (8.7)	10 (43.5)	1 (4.3)		3 (13.0)
공공단체	14 (100)	3 (21.4)					11 (78.6)
일반단체	59 (100)	19 (32.2)	4 (6.8)	13 (22.0)	1 (1.7)		22 (37.3)
종교단체	13 (100)	7 (53.8)		5 (38.5)			1 (7.7)
기업체	104 (100)	40 (38.5)	9 (8.7)	19 (18.3)		1 (1.0)	35 (33.7)
언론사	27 (100)	4 (14.8)	1 (3.7)	20 (74.1)		1 (3.7)	1 (3.7)
교육기관	28 (100)	15 (53.6)		4 (14.3)			9 (32.1)
계	1,117 (100)	306 (27.4)	40 (3.6)	200 (17.9)	34 (3.0)	29 (2.6)	508 (45.5)

\* ( ) 안의 숫자는 %



## 제 2 장

#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

## 제 2 장

##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

2005년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도입된 중재제도는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과 관련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부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절차이다.

최근 3년 간 중재사건 청구 건수는 2015년 26건, 2016년 13건, 2017년 1건으로 조정 사건의 청구 건수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, 그 차이는 언론분쟁의 특성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. 일반 분야에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어 중재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반면 언론분쟁은 사전에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정제도가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.

### 1. 침해 유형별 현황

침해 유형별로 중재사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접수한 중재신청 사건 40건 중 2016년의 재산상 손해로 인한 4건을 제외한 36건은 전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신청이었다.

표 2-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구분 연도	청구 건수	명예훼손	신용훼손	초상권 침해	성명권 침해	음성권 침해	사생활 침해	재산상 손해	기타
2015	26	26							
2016	13	9						4	
2017	1	1							

## 2. 청구권별 및 매체 유형별 현황

2017년의 중재사건은 신문을 대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것으로, 당사자 간 사전 합의에 기반한 중재화해결정이 내려졌다.

표 2-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연도	구분	청구명	청구 건수	처 리 결 과				
				중재결정	중재화해결정	기각	각하	취하
2015	정정		11	11				
	반론		7	7				
	추후		6	6				
	손배		2	2				
	계		26	26				
2016	정정		4	4				
	반론		4	4				
	추후		5	5				
	손배							
	계		13	13				
2017	정정							
	반론		1		1			
	추후							
	손배							
	계		1		1			

표 2-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

(2015. 1. 1. ~ 2017. 12. 31.)

연도	구분	청구 건수	인터넷 뉴스서비스	인터넷신문	신문	뉴스 통신	방송	잡지
2015		26	1	15	5	1	4	
2016		13		9	4			
2017		1			1			

